

### 소규모합병공고

주식회사 큐로홀딩스는 주식회사 영화사나인과 2016년 6월 15일 합병계약(“본건 합병”)을 체결하고, 상법 제527조의3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합병방법: 주식회사 큐로홀딩스가 주식회사 영화사나인을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: 주식회사 큐로홀딩스 : 주식회사 영화사나인 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:
  - 1) 상호: 주식회사
  - 2) 본점소재지: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5길 40, 2층(잠원동, 광운빌딩)
4. 합병기일: 2016년 8월 16일
5.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으로 주식회사 큐로홀딩스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주식회사 영화사나인과 합병을 진행함.
6. 반대의사표시에 관한 사항:
  - 1) 행사절차: 2016년 6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의 이사회결의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.
  - 2) 행사기간: 2016년 6월 29일부터 2016년 7월 13일
  - 3) 행사방법 및 장소:
    - 명부주주: 2016년 7월 13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7, 4층(삼성동, 동원빌딩) 당사 관리부(전화:02-2141-3000)에 이사회결의반대의사표시통지서를 제출.
    - 실질주주: 2016년 7월 8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영업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이사회결의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제출.
 다만, 실질주주의 경우 거래 증권회사에 따라 증권회사를 통한 반대의사표시 행사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
  - 4)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사항: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.
  - 5) 상법 제 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수 없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하거나 혹은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.

####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

본인(법인)은 주식회사 큐로홀딩스와 주식회사 영화사나인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		주주명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의 수	

2016년 월 일

성명(명칭): (인)

주민(사업자)등록번호:

주소:

연락처:

**주식회사 큐로홀딩스 대표이사 귀하**

2016년 6월 29일

주식회사 큐로홀딩스  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7, 4층(삼성동, 동원빌딩)  
대표이사 조 중 기